

형사 피고인을 위한 안내서

체포에서 최종 상소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뉴욕시 법조인 협회, 뉴욕시(맨하탄) 변호인 협회 공동 편찬

목 차

머리말.....	2
감사의 글.....	4
현정의 글.....	6
서언.....	7
사건 개요의 인지.....	7
중앙 등재처(登載處).....	7
형사 법원 기소 인부 절차(起訴 認否 節次).....	8
답변 협상.....	9
형사 법원 기소 인부 절차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11
대배심.....	12
공판전 재정(裁定) 신청.....	13
공판.....	15
공판후 재정 신청.....	19
선고(宣告).....	19
상소(上訴).....	21
법정 요원.....	24
법정내 행동에 관한 일반 수칙.....	25
용어 풀이.....	26

머 리 말

1993년, 미 연방 법원 뉴욕 동부 지구 지원의 잭 B.와인스타인 판사는 18명의 피고 모두에게 통역이 필요했던 한 복잡한 형사 사건을 관장하였다. 각 피고로 하여금 재판 절차에 대해 좀더 숙지할수 있도록 수 많은 서류의 스페인어 통역본을 피고측에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난후 와인스타인 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하였다.

미국의 법 제도에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방 형사법 제도 입문서를 제공하면 유용할 것이다. 그러한 안내서에서 우리의 형사법 제도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기소 포기 또는 유죄의 답변이 무엇을 뜻하는가; 공판의 요강; 대배심과 소배심, 검사, 판사 그리고 치안 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서는 안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안내 책자를 본 법원에서 자주 쓰이는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어 제공 되도록 함에 있어서 뉴욕 도심권의 여러 법조 협회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 법원의 모스께라 등에 관한 사건에서, 816.7 부록 167.177 (1993년 뉴욕 동부 지구 지원)

그로 부터 얼마 안되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뉴욕시 법조 협회와 뉴욕(맨하탄) 변호사 협회 공동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본 책자는 그러한 노력의 소산이다. 본인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주(州) 제도를 중점으로 둔데 대해 와인스타인 판사가 이해를 해 줄지 염려스럽다.

형사법 제도는 복잡하며, 피고인들에게 가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피고들의 경우 두려움과 혼돈은 배가(倍加)되는데 뉴욕 주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당사자 누구나가 소송절차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공정성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데 본 책자는 그러한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체포에서 상소에 이르기 까지 전체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한 간단 명료한 설명은 복잡한 제도를 명쾌하게 이해시키는 일을 탁월하게 수행한다. 이 일로 인하여 공동 위원회는 법원과, 법조계 그리고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러한 중요한 노력에 계기를 마련해 준 와인스타인 판사; 본 과제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공동 위원회의 회원 모두; 공동 위원회 의장으로서 전문가의 지식과 탁견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준 바바라 재프 변호사; 그리고 뉴욕시 법조 협회 사무국장 고문으로 사업의 조정에 도움을 준 앨런 로스스타인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쥬디스 S. 케이
뉴욕 상소법원 수석판사

감 사 의 글

본 안내서를 마련한 공동 위원회는 뉴욕시 법조 협회와 (공공 업무 및 교육 특별 위원회와 형사 법원 위원회) 뉴욕(맨하탄) 변호인 협회(형사 재판부)의 회원들; 공동 위원회 의장 바바라 재프 변호사; 뉴욕 형사 법원의 더글러스 S.윙 판사; 닐 체크맨 변호사; 마이클 거버 변호사; 에드워드 험린 변호사; 윌리엄 나이스리 변호사; 그리고 패트리셔 누네즈 변호사로 구성 되었다.

우리는 관리 및 지원 담당 부수석 행정 판사 베리 A. 코지어; 뉴욕시 법조 협회 수석 고문 앨런 로스 스타인; 그리고 뉴욕시 법조 협회 로버트 B. 맥케이, 지역 사회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업무 담당 존 매코 레이 변호사와 프로그램 조정관 아키라 아로요씨 등의 소중한 도움에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외에도 도움과 조언을 해 주신 분들은 맨하탄 변호인 협회 전 회장이신 클라우스 에플러 변호사; 맨하탄 변호인 협회의 전무 이사 어윈 데이비슨 변호사; 맨하탄 변호인 협회의 형사 재판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루스 픽홀츠 판사와 노먼 L. 라이머 변호사; 맨하탄 검찰청의 래키즈 사무국장 패트릭 듀건 검사; 바바라 S. 존스 판사; 찰스 테하다 판사; 법률 구조 협회 형사 피고부의 전 선임 변호사 로버트 M. 바움 변호사; 뉴욕시 형사재판 시장(市長) 사무국의 형사 재판 조정관 캐서린 N. 램 변호사; 조이스 B. 데이비드 변호사, 부수석 서기 대니얼 알렉산드리노; 뉴욕주 법원 관리 사무소의 전 인사담당 이사 노마 미첨; 선임 법원 분석가 배리 설리번; 선임 법정 통역 마가리따 마티네즈; 뉴욕 형사 법원의 수석 법률서기 윌리엄 클라크; 최고 법원 법정 경찰(경사) 리차드 퍼먼이다.

우리는 또 로버트 B. 맥케이 지역 사회 법률 구조 프로그램을 위해서 본 안내 책자를 스페인어로 자원하여 번역해 줌으로써 보다 많은 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 캐롤라인 번에게 감사코저 한다.

본 안내 책자의 한국어 번역판은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의 전임 회장이신 헬렌 김 변호사와 이 찬우 변호사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번역은 맨하탄 형사 법원에 근무하는 송 경식 법정 통역이 맡았으며 교정을 해 주신 퀸즈 형사 법원의 제이 박 법정 통역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헌정의 글

공동 위원회는 본 과제에 대한 계기를 고취시킨 연방 법원 뉴욕 동부 지구 지원의 잭 B.와인스타인 판사에게 본 안내서를 헌정한다.

서 언

본 안내서는 독자로 하여금, 체포에서 항소까지, 뉴욕주의 형사 재판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앞으로의 모든 굵은 활자체로 된 용어는 26 쪽에 있는 용어 해설부에 그 설명이 되어 있다. 본 안내서는 변호사 대용이 아니다.

사건 개요의 인지

귀하는 경찰관이 귀하가 **증범**, **경범** 또는 **위반**을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체포**된 것이다. 만일 귀하가 **증범** 혐의를 받고 있으면, 경찰관은 **형사 법원에 증범 소장**을, 경범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경범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는 **체포**되지 않을 수 있으나 경찰관은 귀하에게 **출석 명령서(D.A.T.)**를 발부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동행을 시킬 수 있다. **D.A.T.**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서이다.

증양 등재처

귀하가 **D.A.T.**를 받지 못했다면, 수감이 되며 통상 체포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형사 법원** 판사 앞에 나오게 된다. 판사를 만나기 전에 귀하는 **증양 등재처**에 보내져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이 된다. 이 기간 동안에, **지문 조회 보고서 (전과 기록부)**가 작성되고, 전과 사실이 있을 경우 확인이 된다.

그러는 동안에 **검사**는 귀하를 **체포**한 경찰관과 상의하게 된다. 만일 **검사**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귀하에 대한 **소장**을 작성한다. 만일 **검사**가 귀하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한다면 귀하를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귀하는 또 **CJA**라는 형사 법원의 한 직원으로부터 면담을 받게 된다. 본 면담의 목적은 판사로 하여금

- 1) 보석금을 설정할 것인지
- 2) 보석금 없이 석방할 것인지 (무보석금 석방 - **R.O.R.**이 된다고 함)
- 3) 보석금 없이 구금시킬 것인지 (**재유치**)

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귀하가 한 진술은 추후의 법원 소송 절차에서 귀하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보석금이 책정되면 근무 시간 중에는 법원에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귀하가 유치되어 있는 구치소에서 납부할 수 있다.

형사 법원 기소 인부 절차

일단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귀하는 기소 인부 절차를 위하여 법정에 나오게 되고 그 곳에서 귀하에 대한 혐의 내용을 듣게 된다. 기소 인부 과정에서, 귀하의 변호사와 검찰이 공판 없이 귀하의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상의할 수도 있다. 답변 협상을 통하여 유죄로 받아들이거나 이를 거부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다. 기소 인부 절차에서 귀하는 변호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만일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측에서 법률 구조 협회 또는 18-B라는 지정 변호사 계획, 브롱스 변호인단, 브루클린 변호인 단체, 맨하탄 변호인 단체, 퀸스 법률 협회, 피 씨, 또는 아서 수차우 변호사 사무실 (스태튼 아일랜드) 같은 단체로부터 무료 변호사를 지정해 주게 된다.

대부분의 중대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중범 피고인 사무처** 소속의 변호사나 그러한 사건을 다루도록 특별히 훈련된 변호사가 지정될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들은 주에서 급료를 받는다. 변호사를 고용할 의향은 있으나 **기소 인부 절차**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판사는 주 정부 부담으로 **기소 인부 절차**에 한하여 변호사를 지정해 줄 것이다. 그 후부터는 귀하가 고용한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된다. 변호사 없이 스스로 자신을 변론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로 하여금 변론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 하다. 만일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에게 새로운 변호사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귀하 측의 경비 부담으로 다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른 변호사를 원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다른 변호사의 지정이나 고용을 판사가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구금 중에는, **기소 인부 절차시 검사**는 판사에게 귀하를 계속 구금하도록(재유치) 요청할 수가 있다. 귀하의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 다음 판사가 귀하의 보석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보석**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일단 풀려나면, **사건 일정이 정해질 때마다** 법정에 출석 하여야 한다.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다음 법정일자를 통보 받게 된다. 날짜가 변경될 경우 변호사는 귀하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만, 언제 어디로 출석해야 하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은 귀하의 책임이다. 출석하지 않은 채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판사는 귀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이는 경찰에게 귀하를 **체포**하여 법원에 출석 시키라는 내용을 통고함을 뜻한다. 귀하가 **보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는 보석금이 몰수 될 수도 있다.(귀하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만일 경찰이 귀하를 **체포**하여 법정에 데려 오게 되면, 판사가 더

높은 보석금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재유치를 시키는 등으로 보석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일단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지문 조회 보고서(전과 기록)에 남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귀하에게 증인이나 피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를 명할 수도 있다. 이를 임시 보호 명령이라 칭한다. 만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되어 명령 불복종으로 새로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판사는 또 임시 보호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보다 과중한 보석 조건을 명할 수 있다.

답변 협상

일단 귀하, 귀하의 변호사, 그리고 검사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 숙지를 하고 나면, 공판 없이 귀하의 사건을 해결(또는 처리) 하기 위한 시도가 검찰과의 답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답변 협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검사가 판사에게 어떤 특정한 형을 언도 하도록 추천하는 댓가로 귀하로 하여금 유죄를 시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검사는 귀하가 현재의 혐의 보다 낮은 혐의로 유죄를 시인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답변(협상)은 판사가 언도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를 축소시킨다. 판사만이 귀하의 형량을 결정 (법이 정한 범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모든 협상은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답변 협상은 공판까지 또는 공판 중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만일 귀하가 공판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귀하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항상 유죄로 시인할 수도 있다. 판사는 그 후에 귀하의 형량을 결정할 것이다.

모든 범죄에는 형량의 범위가 있다. 범죄는 중범, 경범 그리고 위반의 범주로 나뉘어 진다. 각 범주는 급으로 더 세분이 된다. 중범이란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1급 살인 범죄의 경우 사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증범**의 급에는 **A1, A2, B, C, D** 그리고 **E급 증범**이 있다. **경범**이란 1년 또는 그 미만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경범**의 급에는 **A** 와 **B급 경범**이 있다. 위반에 대한 **징역형**은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호 관찰 (D 및 E급 경범과, C급 증범의 일부에 대해), 조건부 석방, 무조건 석방, 반환 또는 벌금과 같은 **비징역형**이 언도 될 수도 있다. 때로는 **징역형**과 병행하여 **비징역형**이 언도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징역형**을 복역한 후 **보호 관찰형**을 마치도록 한다.

형사 법원의 기소 인부 절차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만일 귀하가 **증범** 혐의를 받고 있고 **형사 법원의 기소인부 절차**를 받았다면, 귀하의 사건은 **증범** 사건에 대해 **대배심**의 기소 여부를 묻는 법정으로 넘겨진다. 드문 경우이지만, **대배심원단**이 귀하의 사건에 대해 청문을 할 때까지 귀하를 **검찰측**에서 구금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하여 **증범 소장에 대한 청문회 (예비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

만일 귀하가 **증범** 혐의를 받고 있고 **재유치**가 된다거나 **보석금을 낼 수가 없어 구금중**이라면, **검찰**은 귀하의 **체포** 후 144시간 (6일) 이내에 귀하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대배심원단**에 제시 하여야 한다. 만일 **검찰측**이 이 기간 내에 **대배심원단**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검찰측**이 **대배심원측**에 당사건이 조속히 제출되지 못했던 이유를 판사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귀하는 **무보석금 석방**이 될 것이다. (**R.O.R.**이 됨). 하지만 귀하는 판사가 지정하는 날에 법원에 출두하여야 한다. 만일 **대배심원측**에서 귀하가 범죄

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평결하면 **기소장**을 제출 시킬 수 있다. 그와 달리 **대배심원측**에서 귀하의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평결하면 귀하는 석방 될 것이다. 만일 귀하가 귀하의 사건이 **대배심원측**에 넘겨지는 권리를 포기하면, **검찰**은 **상급 법원 약식 기소장(S.C.I.)**을 제출하게 된다.

만일 귀하가 **경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보석금을 낼 수 없으면**, 대략 5일 동안 구금되게 된다. 만일 **검찰**이, 귀하를 체포한 경찰관에 의해 제출된 **고소장**을 입증할 법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판사는 귀하를 **무보석금 석방**시킬 것이다. (**R.O.R.**이 됨) 이것으로 귀하의 사건이 기각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귀하는 여전히 판사가 지정하는 날에 법원에 나와야 한다.

대배심

대배심 절차는 비밀로 공개가 되지 않는다. **대배심원단**은 귀하를 **중범**으로 **재판**에 회부시킬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청문 및 결정을 하기위한 16-23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면 기소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귀하는 **대배심원단** 앞에서 **증언**을 할 권리가 있다. 귀하의 변호사는 귀하와 동행하여 참석할 수 있지만, 귀하가 **증언**하는 동안에 침묵을 지켜야 한다. 귀하의 변호사는 **대배심원단** 앞에서 논고를 하거나 **검찰**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만일 귀하가 귀하의 변호사와 **증언** 전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면 **대배심원실** 밖에서 할 수 있다. **대배심원실** 내에서 귀하와 귀하의 변호사가 나누는 대화는 귓속말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배심원단**에 들려서는 안 된다. 만일 귀하가 **대배심원단** 앞에서 **증언**하기로 작정한다

면 귀하는 **검찰측**으로부터 **반대 신문**을 받을 수도 있다.

대배심원들이 귀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질문 사항들은 **검찰**을 통해서 묻게 된다. 귀하는 또 대배심원단에 대해 귀하를 위해 **증언**해 줄 용의가 있는 증인들로부터의 **증언** 청취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증언**하는 동안 **대배심원실**에 귀하의 참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대배심원단**이 기소에 찬성하지 않으면, 귀하는 석방된다. 만일 **대배심원단**이 기소를 표결 시키면, 귀하의 사건은 몇 주 내로 또 다른 **기소 인부 절차**를 위해서 **형사 법원**에서 **최고 법원**으로 넘겨진다. 이 **기소 인부 절차**는 **형사 법원**에서의 **기소 인부 절차**와 유사하다. 귀하는 **대배심원단**에 의해 표결된 범죄 행위로 정식 고발되어 기소되며, 유죄를 시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귀하의 **보석** 조건이 재검토 될 수 있으며 **답변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만일 **유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귀하의 사건은 **해당 부서**로 연기가 된다.

공판전 재정 신청

해당 부서에서 **답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귀하의 변호사는 귀하에 대한 **검찰** 측의 사건에 대해 보다 많은 자료(개시, 開示)나 **검찰**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적 증거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귀하의 변호사는 또 **대배심원단**으로 하여금 **기소장**을 제출토록 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검찰** 측에 의해 제시 되었는지 여부를 판사에게 물어볼 수 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판사는 **대배심** 절차의 **공적** (公的) 등본을 읽어 주게 된다.

만일 판사가 귀하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밝혀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는 **기소장**의 혐의를 각하 시키거나 아니면 증거가 낮은 혐의의 범죄만을 저질렀음을 밝혀줄 경우 낮은 혐의로 **기소** 내용을 경감 시키게 된다. 드문 경우이긴 해도, **기소**가 정의에 입각하여 각하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단지 판사가 귀하의 **사법 처리**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한한다.

만일 경찰관이 귀하로부터 재산을 압수 했거나, 경찰 측에 진술을 했거나, 경찰이 증인으로 하여금 귀하의 범행을 확인 했다면, 귀하의 변호사는 그러한 증거의 사용 금지(삭제)를 요구하는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판사는 삭제(신청) 청문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귀하는 당 **청문회**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귀하가 판사에게 제출하는 **재정 신청**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청문회가 소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맵(Mapp) 청문회**에서 판사는 경찰이 합법적으로 귀하의 재산을 압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청문을 하게 된다. **헌트리(Huntley) 청문회**에서 판사는 귀하가 경찰 측에 진술을 했는지 했다면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당시에 경찰이 합법적으로 행동 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청문을 하게 된다. **웨이드(Wade) 청문회**에서는, 판사는 경찰이 증인들로 하여금 귀하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확인하게 했을 때 정당한 방법을 사용 했는지에 대해 청문을 한다. **던어웨이(Dunaway) 청문회**에서는, 경찰이 귀하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했는지에 대해 청문을 한다.

삭제(신청) 청문회중에는 경찰관과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듣게 된다. 귀하의 변호사는 **검찰측 증인**에게 **반대 신문**할 기회를 갖게 되며, 귀하에게도 증언을 하고 증인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경찰이 합법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거나, 귀하가 제시하는 **증거**를 통하여 경찰이 불법적으로 행동 했다는 사실을 귀하 측에서 입증 한다면, 판사는 해당 **증거**를 삭제할 것이다.

만일 판사가 증거를 삭제하면, 검찰은 공판시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된다. 만일 **검찰**이 다른 증거를 갖고 있지 않고 판사의 결정에 **항소**를 할 의도가 없다면, 검사는 귀하 사건의 각하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판사에게 제출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검찰은 또 일정한 기간 내에 귀하의 사건을 공판에 회부 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살인 사건**이 아닌 경우, **검찰**은 **형사 법원에 증범 소장**이 접수된 후 6개월 이내, **경범**의 경우 **형사 법원에 경범 소장**이 접수된 후 90일 이내에 공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검찰**이 6개월 이내에 귀하의 사건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귀하가 **중범**의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귀하에게 책임이 있는 경과 일수가 그 기간을 축소시키지 않았으면 (**경범**의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90일), 판사는 귀하의 **재정 신청**이 있을 경우, 귀하의 사건을 각하 시켜야 한다. 또한 검찰이 귀하의 사건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공판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귀하에 대한 혐의가 각하되지는 않더라도 석방될 자격은 주어질 수 있다.

귀하의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는데 대한 지연에 귀하 측에 책임이 있다면, 석방에 관계되는 6개월, 90일 또는 다른 기간에 해당 지연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판

일단 **공판전 청문회**가 끝나고 귀하가 **유죄 시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귀하의 사건은 **공판**을 위하여 배심원부로 보내져 그곳에서 판사 또는 **배심원단**이 귀하의 유, 무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귀하는 **배심**

원단을 포기하고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형** 언도가 가능한 유일한 범죄인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배심원단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판**이란 공개 법정에서 열리는 사법 절차이다. 귀하는 **공판**에 참석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만일 귀하가 방해가 된다면, **배심원단**이 배석중일 때 법정을 떠나 있도록 강요 받을 수도 있다.

배심원 재판은 귀하가 공판을 받는 행정 구역 거주민으로부터 **배심원단**을 선출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배심원단**은 귀하의 **공판**이 시작되는 주(週)에 근무 소집된 사람들로부터 선출된다. 만일 귀하가 **중범** 혐의를 받고 있으면 12명의 **배심원**과 두 사람 이상의 **예비 배심원**이 선출된다. 만일 귀하가 **A급 경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으면, 6명의 **배심원**과 두 사람 이상의 **예비 배심원**이 선출된다. **B급 경범**이나 **위반**은 판사 앞에서 공판을 받는다.

공판이 시작되면, 많은 수의 사람들 (배심총원, 陪審總員)이 법정에 들어오게 된다. 법정 서기가 이들을 호명하고, 이들은 **배심원석**에 앉게 된다. 이들은 각각 판사, **검사** 그리고 귀하의 변호사로부터 귀하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편견 없는 **배심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만일 **배심원** 가운데 편견을 표시하거나 자신이 공정하지 못할 거라고 믿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유 있는 기피**가 되어 귀하의 **공판**에 **배심원**으로 배석하지 못한다. 그에 더해서 **검찰**과 귀하 (귀하의 변호사를 통해)는 배심원 중에서 편견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공정할 능력이 없다고 의심을 품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을 배석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이를 **전단적 기피**라 한다. 양측에서 각각 거부 할 수 있는 **전단적 기피자** 수는 귀하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의 급에 따라 달라진다. 배심원들은 그들의 인종, 종교, 민족성, 성

별 또는 성적(性的) 성향 등에 근거하여 기피될 수 없다. 일단 필요한 수의 배심원이 양측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배심원들은 선서를 하고 배심원석에 앉게 된다. 그런 다음 판사는 공판 절차, 기본적인 법의 원리, 그리고 배심원들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음에는 검사가 배심원단 앞에서 모두(冒頭) 진술을 하게 된다. 모두(冒頭) 진술에서, 검사는 배심원단에게 귀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길 기대하는지를 말하게 된다. 귀하의 변호사도 배심원단 앞에서 모두(冒頭) 진술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도록 규정된 것은 아니다.

증거는 증인들의 선서 증언과 증거 물건으로 이루어진다. 귀하에 반하여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 대한 질문 행위는 직접 신문이라 한다. 다음에 귀하의 변호사가 이들 증인들에게 질문을 할 것이다.(반대신문) 양측은 사건의 일환으로 물적 증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증거물건)

검사 측의 귀하 사건에 대한 논고가 끝나면, 귀하도 원한다면 항변을 제시할 수 있다. 귀하는 증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다. 귀하는 증언을 하도록 강요 받지 않는다. 귀하는 또 증언을 하지 않고 귀하 측 증인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귀하에 대한 유죄(여부) 판결 전에, 배심원단은 검찰이 귀하가 유죄라는 것을 합리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했는지, 귀하가 항변을 제시했는지를 판정해야 한다.

만일 귀하가 항변을 제시하면, 판사는 귀하가 제시한 내용에 대한 응답으로 추가적인 반증의 제시를 검찰 측에 허용할 수 있다. 만일 판사가 반증을 허용하면, 귀하의 변호사는 검찰의 반증에 대한 응답으로 증거제시를 허용 받을 수 있다. 이를 4차 소답이라 한다.

증거가 제시되고 나면, 귀하의 변호사와 **검찰**의 순으로 **배심원단**에게 **종결 진술 (최종 진술)**을 하며, 양측은 서로 배심원단에게 서로 **유죄로 결정**되게 하거나 **무죄 방면**되도록 설득하고자 노력한다. **최종 진술**이 있고 나서,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귀하의 사건에 적용이 되는 법률을 설명하게 된다(**배심원에 대한 설시(說示)**) 그런 후 **배심원단**은 심의를 위해서 밀실로 자리를 옮긴다.

배심원단의 결정을 **평결**이라 부른다. 만일 **배심원단**이 제시된 **증거**가 귀하가 유죄라는 것을 **합리적이고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면, **평결**은 유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배심원단**이 제시된 **증거**가 귀하가 유죄라는 것을 **합리적이고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한다고 결정하면 **평결**은 유죄가 된다. 만일 귀하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으면, 배심원단은 그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또는 일부는 유죄로 나머지는 무죄로 **평결**을 내릴 수 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만장 일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배심원** 전원이 **평결**에 동의하여야 한다. 종종, 장시간의 **심의** 후에도 **배심원**들이 **평결**에 이르지 못하겠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불일치 배심**이라 한다. 그런 일이 생길 경우, 판사는 **미결정 심리**를 선언하며 **검찰**은 귀하의 사건에 대해 다시 **공판**을 모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귀하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이 나면, 귀하는 혐의로부터 **면소(免訴)**가 되며 동일한 혐의로 주 법원으로부터 재심을 받지 않는다. 만일 귀하가 구금 상태에서 **면소(免訴)**가 되면, 귀하는 즉시 석방이 된다. 만일 유죄로 **평결**이 나면, **유죄 판결**이 되어 **형을 언도** 받아야 된다. 그런 후

형의 선고를 위해서 연기가 된다.

공판후 재정 신청

선고가 있기 전에, 귀하는 **평결** 파기 **재정 신청**을 낼 수 있다. 만일 판사가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판사는 **평결**을 파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만일 판사가 **평결**을 파기하면 귀하는 (사건의) 각하, 혐의의 감면 또는 새로운 공판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선고

공판을 통해서든 아니면 **답변 협상**을 통해서든 **유죄 판결**이 되면, 판사에 의해 **선고**를 받는다. 귀하, 귀하의 변호사, **검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의 범죄 희생자(있을 경우) 모두 귀하의 **선고**에 대해서 판사로부터 진술을 들을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귀하가 사형 선고가 가능한 1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다음으로 **배심원단** 앞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사형 선고**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 징역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가능한 **형량**이 사형이 아닌 사건에서는 **선고**에 앞서, **보호 관찰부**에서 귀하의 배경과 범죄 사건의 정황에 대해 판사 앞으로 보고서(**선고전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 작성 시 귀하는 **보호 관찰관**의 면담을 받을 수도 있다. **보호 관찰부**에 협조를 하는 것이 그들이 귀하를 평가하는데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귀하의 변호사와 **검사**도 판사에게 제출할 **선고전 비망록**을 작성할 수 있다.

귀하가 받게 될 형량은 귀하의 배경, 범죄 사건 정황 그리고 희생자의 태도 등을 포함하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형량의 종류는 징역형이나, 보호 관찰, 조건부 석방, 무조건 석방, 배상과 벌금 등을 포함 한다. 1급 살인의 유죄 판결과 사형이 적절한 형량이라는 배심원단의 결정이 있고 나면, 사형이 선고 될 수 있다. 만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 집행기관(경찰 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 관찰형을 받게 되면, 귀하는 석방이 되고 보호 관찰부에 의해 수년간 감독을 받게 된다. 귀하는 소정의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조건부 석방형을 받게 되면, 귀하는 석방이 되며 보호 관찰부에 의해 감독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귀하는 정해진 기간동안 소정의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징역 형기가 끝난 후 일정 기간 보호 관찰을 받는 혼합형을 받을 수도 있다. 보호 관찰이나 조건부 석방 기간은 조건부 형량이 된다. 만일 부과된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귀하는 징역형을 재연도 받을 수 있다. 만일 귀하가 무조건 석방으로 선고를 받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이 된다. 벌금형이나 배상 명령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형과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귀하는 추징금과 범죄 희생자 원조 기금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 귀하는 귀하가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합법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귀하의 이전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형량을 증가 시키려는 검찰의 의도에 항변할 권리를 갖는다. 귀하가 하나 이상의 범법 행위로 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미 다른 형을 복역 중이라면, 귀하의 사건의 정황에 따라 기가 동시에 경과되는 합산 형량을 받거나, 한 형기가 끝나고 다른 형기가 시

작되는 분리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 만일 귀하가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합산 형량과 분리 형량의 혼합된 형태로 형량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범죄 행위 당시 귀하의 나이가 13, 14 또는 15세인 경우 미성년범 (J.O.)으로 형량을 선고 받는다. 만일 범죄 행위 당시 귀하의 나이가 14, 15, 16, 17, 또는 18세인 경우 청소년 범(Y.O.)으로 처리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귀하가 16번째 생일을 맞게 되면, 귀하는 청소년이지, 미성년이 아니다. 19번째 생일을 맞게 되면 귀하는 성년이며 청소년이 아니다. 귀하가 만일 청소년범으로 처리되면, 귀하의 범법 행위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으며 낮은 형량을 받을 수가 있다.

상소

귀하가 형량을 선고 받고나면, 귀하의 유죄 판결 또는 형량에 대한 상소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형량을 받든지 상관없이 상소를 할 수 있다. 귀하의 상소는 귀하가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 받은 법원의 재판 절차를 검토할 상소 법원 판사단 (상소법원)에 의해 판결이 된다. 귀하는 어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든, 공판 후에 또는 유죄 시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든 지에 상관없이 상소를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귀하가 유죄를 시인하면, 어떤 쟁점에 대해서 귀하의 상소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때로는 답변 협상의 일환으로 상소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귀하는 상소 법원이 어떤 쟁점을 검토하도록 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사형이 언도된 경우에는 특별한 상소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 경우에는 귀하는 상소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기타 다른 모든 경우에는 귀하가 형을 선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소 의향 통지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통지서는 법원 서기와 검찰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한다. 만일 귀하가 귀하의 변호사에게 요청을 하면 변호사는 당 통지서를 접수 시켜야 한다. 만일 귀하의 통지서가 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으면, 법원 측에 기한 연장 재정 신청을 하여 상소 허가를 요청 하여야 한다. 그러한 재정 신청은 귀하의 형 선고일로부터 1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리고 귀하는 귀하의 통지서가 30일 이내에 접수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귀하가 변호사에게 지불할 돈이 없어서 귀하의 상소 절차에 변호사가 지정되길 원하면, 법원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귀하의 상소 변호사는 사건 기록 등본과 기타 필요한 법원서류와 증거물건 등을 법원 측으로부터 입수하게 된다. 변호사는 상소에 필요한 법원 서류(사건 적요서 또는 재정 신청서)를 작성하며, 필요하다면, 상소 법원에서 귀하의 사건을 구두로 논의할 것이다. 삭제 청문회나 공판과는 달리, 귀하의 상소 심리가 있을 때 귀하는 상소 법원에 참석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귀하가 징역형을 선고 받지 않았으면, 상소 논고에 참석할 수 있다. 만일 귀하의 상소가 추인(追認) 되면, 즉 상소 법원이 귀하가 공정한 공판을 받았고 귀하가 유죄라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거나, 귀하의 유죄 시인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결하면, 귀하는 뉴욕 주의 최고 법원인 최상급 상소 법원에 다시 상소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권리를 갖는다.

만일 최상급 상소 법원이 귀하의 사건을 재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귀하의 유죄 판결을 추인(追認)

하면, 귀하의 뉴욕 주 상소 절차는 종결된다. 미연방 최고 법원에 상소 신청을 하는 등의 더 이상의 절차는 본 안내서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상소 변호사에 문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 지정 변호사(무료 변호사)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만일 귀하의 유죄 판결이 파기되면, 귀하의 사건은 각하되며, 새로운 공판이나 청문회를 가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의 유죄 시인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만일 귀하의 유죄 판결이 수정되면, 귀하는 낮은 형량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죄목이 경감되거나 아니면 둘 다 모두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뿐 아니라, 상소 법원은 공판을 받은 재판소로 특정 쟁점에 대하여 청문회를 갖도록 (사건을) 환송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시사항이 이행되고 나면, 상소 법원에서 귀하의 상소를 심리하게 된다.

상소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석방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를 연기(유예) 신청이라 한다. 만일 귀하의 연기(유예) 신청이 허락되면, 모든 정황에 근거하여 보석 또는 무보석금 석방이 가능하다. A급 중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연기(유예) 신청을 할 수 없다. 상소 중에는, 비록 귀하의 상소가 최상급 상소 법원까지 계속될 경우에는 다시 연기(유예)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단 한번만의 연기(유예) 신청이 허용된다.

어떤 상황에서는 비록 귀하에 대한 혐의가 각하되었더라도, 검찰이 상소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이를 검찰 측 상소라 한다. 검찰 측 상소가 받아들여지면, 귀하에 대한 혐의가 부활되고 사건이 계속 심리 된다. 검찰이 면소된 사건을 상소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법정요원

각 법정에는 근무 요원을 두게 된다. 귀하의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 외에도 1명 이상의 법정 서기, 수명의 정복 법정 경찰, 1명의 속기사 그리고 1명의 공식 법정 통역이 있다.

법정 서기는 재판정 내(판사석과 방청석 중앙)에 배석한다. 법정 서기는 법정 요원을 감독하고 법정의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또한 증인 선서를 시키며 사건 일정표에 실린 사건 번호와 피고를 호명한다.

공식 법정 속기사는 모든 법정 소송 절차 기록을 남긴다. 기록 보관을 위해서 진술되는 모든 말을 기록한다. 소송 당사자나 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정 속기사는 소송 절차의 사본을 작성한다.

공식 법정 통역은 피고를 위해서 통역을 한다. 만일 증인이 영어를 못하면, 통역은 법정과 배심원단을 위해서 통역을 한다.

귀하가 구금중일 경우에는, 귀하는 정복 법정 경찰과 수시로 접촉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법정내 질서유지;
- * 법정 보안 유지;
- * 법정내 모든 사람들의 보호;
- * 구치소로부터의 피고인 호송.

만일 피고인이 법정과 동일한 층에 있지 않으면, 피고인은 구치소로부터 법정까지 안내 되는 동안 손을

뒤로하여 수갑이 채워져야 한다. 정복 법정 경찰로 하여금 법정내 보안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금중인 피고의 법정 내 행동에 관한 소정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 피고는;

- * 갑작스런 움직임;
- * 정해진 좌석의 이탈;
- * 고함을 치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 * 증인과의 논쟁;
- *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방청인에 이야기하기;
- * 지시 없이 움직이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법정내 행동에 관한 일반 수칙

● 구금중인 피고인에 대한 방청인의 면회는 특전이지 권리가 아니며, 피고가 협조적일 경우에만 허용이 될 것이다. 단, 신체적인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방청인들은 질서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증인에게 고함을 치거나 위협을 한다거나, 증인에 대해 논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용 어 풀 이

가석방 없는 종신 징역형(life imprisonment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석방 가능성이 없는 징역형의 선고.

검사(prosecutor): 형사 사건에서 정부를 대변하는 법률가 (검사보 A.D.A., 검찰 또는 검찰 당국으로도 불린다.)

검찰측 상소(People's appeal): 검찰 측에 의해서 제기되는 상소.

경범(misdemeanor): 1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

경범(비형사범, violation): 15일 구류 이하의 형에 해당 하는 형사 범죄가 아닌 규칙 또는 행정 명령 위반 행위.

경범 소장(misdemeanor complaint): 경범 사건에서 초기의 혐의를 밝히는 법원 제출 서류.

고등법원(Supreme Court): 중범이 연루된 사건의 심리가 이루어지는 법원.

고소(告訴, charge):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

고소장(告訴狀, complaint): 고소인에 의한 정식 고발장. (고소인의 서명이 된)

공판(trial):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사나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법정 절차.

기록 등본(transcripts): 법정 내에서 모든 진술내용을 적은 공식기록.

기소 인부 절차(起訴 認否 節次, arraignment): 혐의자가 자신에 대한 혐의 사실을 통고 받는 법원 소송 절차. 각 독립 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주간(晝間) 기소 법정, 오후 5시부터 오전 1시까지는 야간 기소 법정이 열린다. 맨하탄에서는 심야 기소 법정, 목, 금, 토요일에 오전 1시부터 오전 9시 까지 열린다.

기소장(起訴狀, indictment): 대배심원단에 의해 표결이 된 증범(때로는 경범) 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서류.

답변 협상(答辯 協商, plea bargain): 피고, 판사 그리고 검사간의 합의로써 피고가 대개 특정한 형이 선고 될 거라는 약속을 받는 대가로 유죄를 시인하는 것.

대배심(원단)(大陪審(員團), grand jury): 검찰이 혐의자에 대해 증범 혐의로 소추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일단의 시민들.

맨하탄 변호인단: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를 한다.

모두 진술(冒頭 陳述, opening statement): 공판이 시작될 때 배심원단 또는 판사에게 행하는 논고.

무보석금 석방(release on recognizance, R.O.R.):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보석금 없이 석방되는 것.

무조건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

미결정 심리(mistrial): 평결에 이르기 전에 판사가 공판을 중지 시키는 결정.

미성년범(Juvenile Offender, J.O.): 연령이 13, 14 또는 15세일 때 일어난 범죄 행위에 대해 형을 선고 받는 자.

반대 신문(反對 訊問, cross-examination): 증인을 부르지 않은 변호사에 의한 증인 신문.

반증(反證, rebuttal): 어떤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되는 증거 또는 논고.

방면(放免, acquittal): 혐의자가 유죄가 아니라고 하는 공판 배심원단 또는 판사의 결정.

배상(賠償, restitution):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형.

배심원(단)(陪審員(團), jurors(jury)): 공판에서 피고가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평결하는 일단의 시민들.

배심원에 대한 설시(說示)(jury charge or jury instructions): 배심원단에게 읽어 주는 법률 설명.

배심원석(jury box): 배심원단이 앉는 곳.

벌금형(fine): 돈의 지불을 요구하는 선고.

법률 구조 협회(The Legal Aid Society): 변호사에게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변론해주는 사설 비영리 단체.

보석금(保釋金, bail):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석방에 대한 대가로 법원에 지불하도록 명령을 받은 돈.

보석금 납부(post bail): 책정된 보석금을 납부하기.

보호 관찰(保護 觀察, probation): 징역은 요구하지 않으나 보호 관찰국의 감독하에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조건을 준수 하도록 요구하는 형량.

보호 관찰관(保護 觀察官, probation officer): 보호 관찰국 소속으로 선고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호 관찰에 부처진 피고를 감독하는 관리.

보호 관찰국(보호 관찰국, Department of Probation): 피고의 배경과 범죄 행위 정황에 관해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 보호 관찰국은 또 보호 관찰형을 받은 피고를 감독한다.

불일치 배심(hung jury): 공판 배심원단이 평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

브롱스변호인단: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를 한다.

브루크린 변호인단: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를 한다.

복합 복역 (선고) (concurrent sentences): 여러 개의 형을 동시에 복역하는 것 (하도록 하는 선고).

사건 개요의 인지 (開示, discovery):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정보를 밝혀내는 절차.

사건 적요서(摘要書, brief): 서면으로 된 법률 논고.

4차 소답(訴答)(surrebuttal): 반증 증거에 대한 응답으로 상대방 측에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공판의 과정.

삭제 명령(suppression order): 공판에서 특정 증거의 채택을 금하는 법원 명령.

살인(homicide): 다른 사람에 의해 어느 한사람의 살상이 수반되는 범죄 행위.

상급 법원 약식 기소장 (Superior Court Information, S.C.I.): 중범과 간혹 경범 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에 의해 제출되는 서면 고발장.

상소(上訴, appeal): 하급 법원에서의 소송 사건에 대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

상소 논고(上訴 論告, appellate argument): 상소 법원 판사 앞에서 상소에 대해 구두로 논고가 이루어지는 법원 소송 절차.

상소 법원 판사(appellate judges) (상소 법원(Appeals Courts)): 상소를 재결하는 판사.

선고 공판 절차(sentencing proceeding):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언도 하여야 할 지를 결정하기 위한 배심원 공판.

선고전 보고서(pre-sentence report):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보호 관찰국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

선고전 비망록(pre-sentence memoranda):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검찰과 피고 측에 의해 작성되는 서류.

선고(절차)(sentencing): 형량이 언도되는 법원 소송 절차.

선고(언도) 형량(sentence): 유죄 판결 후에 판사가 언도하는 형량.

선서(宣誓, sworn oath): 사실을 이야기 하겠다는 서약.

심의(審議, deliberations): 피고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유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판시 제시된 증거를 배심원들이 심의하는 비밀 회의.

씨 제이 에이(Criminal Justice Agency): 체포된 사람의 배경을 조사하여 판사로 하여금,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보석금을 책정할지, 보석금 없이 석방할 것인지 (R.O.R) 또는 구금을 시킬 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건 당사자를 면하는 기관.

에이턴 비 (18-B Panel): “지정 변호사 계획”을 볼 것.

연기(adjournment): 형사 사건의 연기.

연기(유예(猶豫))신청(application for a stay): 상소가 계류 중인 동안에 석방을 요청하는 것.

연속 복역 (선고)(consecutive sentences): 여러 개의 형량을 연속적으로 복역하는 것(하도록 하는 선고).

예비 배심원(alternate jurors): 12 또는 6명의 배심원 중에서 재판중 결원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선택되는 배심원.

유죄 시인(plead guilty, guilty plea): 피고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을 시인하는 것.

유죄 판결(conviction): 답변 협상이나 공판 평결에 따르는 범죄 행위의 유죄 판결.

이유 있는 기피(challenge for cause): 배심원이 공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법에 허용된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배심원 근무를 면제 시키기 위하여 하는 재정 신청.

이의(objection): 어떤 증거를 금지하거나 배제하는 명령을 판사에게 요청하는 행위.

일정 지정(calendared): 사건에 있어서 법정 소송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정하기.

입시(한시(限時)) 보호 명령(temporary order of protection):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인과 접촉하거나 같이 있는 것을 금하는 법원 명령.

재유치(수감)(remand or remanded to custody): 감옥에 보내지는 것.

재정(裁定) 신청(motion): 법원의 명령을 요청하는 행위.

재판정(well): 피고,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앉는 탁상이 놓여진 법정 공간. (판사석은 제외)

전과 기록(지문 보고서)(rap sheet(fingerprint report)): 피고의 과거 또는 현재 계류 중인 체포, 유죄 판결 기록 적요서.

전단적(專斷的) 기피(peremptory challenge): 배심원의 배석을 무조건 배제하기 위한 재정 신청.

조건부 석방(conditional discharge): 보호 관찰부의 감독 없는 석방 선고, 하지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종결(최종) 진술(summation): 공판에서 행해지는 최종 논고.

중범(felony):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1급 살인에 대해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 행위.

중범 변호인 사무처(Capital Defender's Office): 사형 선고가 가능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변호하도록 특별히 훈련된 변호사를 알선한다.

중범 소장(felony complaint): 중범 사건에서 초기의 혐의를 밝히는 최초의 법원 제출 서류.

중앙 등재소(登載所)(Central Booking): 체포 후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는 (법원내) 경찰 사무소.

증거(evidence): 청문회 또는 공판에 제시되는 증언과 증거 물건.

증거 물건(exhibits): 청문회 또는 공판에 제시되는 물적 증거.

증언(testify, testimony): 선서하에 진술하는 것.

지문(fingerprints): 사람들의 신원 확인에 쓰이는 각 개인 고유의 손가락 무늬의 복사.

지문 보고서 (전과 기록)(fingerprint report(rap sheet)): 피고의 종전 또는 현재 계류 중인 체포, 유죄 판결 적요서.

지정 변호사 계획(Assigned Counsel Plan):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지불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변론해 주기 위한 사설 변호사 모임. 이들 변호사들의 용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불한다.

직접 신문(direct examination): 증인을 부른 변호사에 의한 증인 신문.

청문회(hearing): 판사가 사건의 쟁점을 재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증언을 하고, 증거 물건의 검토 또는 법적 논고가 이루어지는 법원 소송 절차.

청소년범(Youthful Offender, Y.O.): 혐의자가 14, 15, 16, 17 또는 18세일 때 일어난 범죄 행위에 대해 형을 선고 받는 자.

체포(구속)(arrest): 경찰에 의해 구금이 되는 행위.

체포 영장(bench warrant): 혐의자가 지정된 날짜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때 혐의자의 체포를 명하는 법원 명령.

최상급 상소 법원(Court of Appeals): 뉴욕주 알바니에 위치하고 있는 뉴욕주 내의 최고 법원.

(원심)추인(追認)(affirmance): 상소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추인하는 것. (상소가 기각됨)

추징금(surcharge): 유죄 판결 시 부과되는 돈.

출석 명령서 (Desk Appearance Ticket, D.A.T.): 위반 혐의자를 고발하는 서류. 지정된 장소(법원)와 지정된 시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명령)취소[해제](vacated): 취소되어 법적 효력이 없는 법원 명령.

파기(破棄), (원심의) (reversal): 하급 법원의 결정을 파기하는 상소 법원의 결정.

평결(評決)(verdict):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행위의 유, 무죄에 대한 공판 판사 또는 배심원단의 결정.

포기(waive):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

피고(defendant):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합리적이고 의심의 여지없이(beyond a reasonable doubt): 검찰 측이 혐의자가 유죄라는 것을 공판 시 증명하여야 할 입증의 책임.

항변(抗辯)(defense):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위하여 제시되는 증거나 논고.

해당 부서(calendar part): 사건의 추후 일정에 따라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법정.

형사 법원(Criminal Court): 형사 소송 절차가 시작되는 법원. 경범 사건은 계속 본 법원에 남게 된다.

혼합형(split sentence): 징역형 복역 후 보호 관찰 기간이 따르는 형.

환송, (사건의) (remit):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상소 법원의 명령.

뉴욕시(맨하탄) 법조 협회
42 West 44 Street
뉴욕, 뉴욕 10036-6690 1997년

